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464호 2020년 8월 27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77호) 6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78호) 36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79호) 38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0호) 45
- 영덕군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1호) 46

■ 공 고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18호) 51
-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21호) 52
-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22호) 57

시 군

■ 고 시

- 구미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0-227호) 67
- 하천점용허가 고시
(상주시 고시 제2020-227호) 68
- 고령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군 고시 제2020-943호) 69
- 성주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정정 고시
(성주군 고시 제2020-75호) 71
- 월항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성주군 고시 제2020-76호) 75

■ 공 고

-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공고 제2020-1160호) 85
-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시 공고 제2020-1166호) 90
-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청송군 공고 제2020-740호) 93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4호) 96

■ 규 칙

-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 규칙 제795호) 98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 규칙 제796호) 99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 규칙 제797호) 100
-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교육 규칙 제798호) 102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 규칙 제799호) 107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 규칙 제800호) 109

■ 공 고

-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수시공개목록 공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5호) 112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277호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농공단지 일반현황

1. 농공단지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807번지 일원

- 면 적 : 244,721m²
- 관리기관 : 칠곡군수

2. 조성목적 [변경없음]

- 농기계제조 전문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로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함

3.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민간개발
- 시행기간 : [기정] 2013. 03. ~ 2017. 12., [변경] 2013. 03. ~ 2019. 10. 31.

4. 추진경위 [변경]

- 2013. 03. 18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3-30호)
- 2013. 04. 01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3-36호)
- 2013. 04. 11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3-40호)
- 2013. 12. 12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변경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3-144호)

- 2014. 05. 01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4-49호)
- 2015. 04. 06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5-58호)
- 2015. 05. 19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5-77호)
- 2015. 07. 06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5-228호)
- 2015. 12. 15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5-202호)
- 2016. 03. 18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6-41호)
- 2016. 04. 21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
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6-99호)
- 2016. 06. 24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6-87호)

- 2016. 09. 09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6-118호)
- 2016. 12. 27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6-170호)
- 2017. 11. 10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7-152호)
- 2017. 12. 14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
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7-362호)
- 2017. 12. 22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7-175호)
- 2018. 04. 27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8-64호)
- 2018. 08. 31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8-136호)
- 2019. 04. 30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19-67호)
- 2019. 09. 03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준공인가
(칠곡군 고시 제2019-847호)
- 2020. 07. 28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칠곡군 고시 제2020-130호)

5. 분양현황 [변경]

[기정]

구분	면 적 (㎡)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 성 기 간	사 업 시행자
		분 양	미분양	소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44,721.0	159,332.9	24,784.4	184,117.3	244,721.0	-	244,721.0		
산업 시설	180,230.3	159,332.9	20,897.4	180,230.3	180,230.3	-	180,230.3	2013.03 ~ 2017.12	(주) 지에스 산업 개발 외 3개업체
지원 시설	3,887.0	-	3,887.0	3,887.0	3,887.0	-	3,887.0		
공공 시설	35,075.4	-	-	-	35,075.4	-	35,075.4		
녹지 시설	25,528.3	-	-	-	25,528.3	-	25,528.3		
※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분양(분할)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1,650㎡임									

[변경]

구분	면 적 (㎡)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 성 기 간	사 업 시행자
		분 양	미분양	소 계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244,721.0	184,117.3	-	184,117.3	244,721.0	-	244,721.0		
산업 시설	180,230.3	180,230.3	-	180,230.3	180,230.3	-	180,230.3	2013.03 ~ 2019.10	(주) 지에스 산업 개발 외 3개업체
지원 시설	3,887.0	3,887.0	-	3,887.0	3,887.0	-	3,887.0		
공공 시설	35,075.4	-	-	-	35,075.4	-	35,075.4		
녹지 시설	25,528.3	-	-	-	25,528.3	-	25,528.3		
※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분양(분할)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1,650㎡임									

6. 입주현황 [변경]

[기정]

구분	입주업체수(개)					
	소 계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기타기계 및 장비
산업시설	23	1	3	3	14	2
구분	면 적(㎡)					
	소 계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기타기계 및 장비
산업시설	180,230.3	27,428.8	22,931.3	13,425.0	109,653.2	6,792.0

[변경]

구분	입주업체수(개)							
	소 계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 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전기장비 + 기타기계 및 장비
산업 시설	23	1	3	3	12	1	2	1

구분	면 적(m ²)							
	소 계	식료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기타기계 및 장비	금속가공 제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 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전기장비 + 기타기계 및 장비
산업 시설	180,230.3	27,428.8	22,931.3	13,425.0	79,768.1	3,468.7	29,885.1	3,323.3

7. 입지여건 [변경]

[기정]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시행기관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도로 - 도로면적 : 25,251.9m² - 연장 : 1,891m - 폭원 : 8m ~ 15m 	사업 시행자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관I.C 3.5km 위치, 국지도79호선 및 석전로 접근가능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곡군청(3km), 칠곡군 종합운동장(1.5km), 칠곡휴게소(상) 접 	
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량 : 350.06m³/일(공업용수 229.26m³/일, 생활용수 120.8m³/일) ◦ 생활용수는 기존관로, 공업용수는 지하수(자체개발)를 통해 공급 ◦ 사업지구 내 표고가 가장 높은 동측의 V=200m³/일(생활용수 100ton, 공업용수 100ton) 규모의 배수지에 저장 후 각 시설로 공급 	사업 시행자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400.65KW ◦ 한국전력공사 칠곡변전소에서 전력공급 	한국전력 공사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시행기관
통신	◦ 사업지구 내 통신은 512회선 공급 (산업시설 451회선, 지원시설 14회선, 여유량 47회선)	한국통신 칠곡전화국
오·폐수	◦ 오·폐수량 : 191.89m ³ /일 (공업폐수 : 84.91m ³ /일, 생활오수 : 106.98m ³ /일) ◦ 오·폐수처리하는 기매설된 관로를 통해 왜관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사업시행자
폐기물	◦ 생활폐기물 : 1,181.68kg/일 ◦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계)280.044톤/일, (지정폐기물)35.535톤/일 ◦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변경]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시행기관
도로	◦ 단지 내 도로 - 도로면적 : 25,251.9m ² - 연장 : 1,891m - 폭원 : 8m ~ 15m	사업시행자
교통	◦ 왜관I.C 3.5km 위치, 국지도79호선 및 석전로 접근가능	
주요시설	◦ 칠곡군청(3km), 칠곡군 종합운동장(1.5km), 칠곡휴게소(상) 접	
용수	◦ 용수량 : 355.71m ³ /일(공업용수 229.26m ³ /일, 생활용수 126.45m ³ /일) ◦ 생활용수는 기존관로, 공업용수는 지하수(자체개발)를 통해 공급 ◦ 사업지구 내 표고가 가장 높은 동측의 V=200m ³ /일(생활용수 100ton, 공업용수 100ton) 규모의 배수지에 저장 후 각 시설로 공급	사업시행자
전력	◦ 47,400.65KW ◦ 한국전력공사 칠곡변전소에서 전력공급	한국전력 공사
통신	◦ 사업지구 내 통신은 512회선 공급 (산업시설 451회선, 지원시설 14회선, 여유량 47회선)	한국통신 칠곡전화국
오·폐수	◦ 오·폐수량 : 196.91m ³ /일 (공업폐수 : 84.91m ³ /일, 생활오수 : 112m ³ /일) ◦ 오·폐수처리하는 기매설된 관로를 통해 왜관하수처리장에서 처리	사업시행자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시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폐수는 개별 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왜관 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 연계·처리하며,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위탁처리(무배출)토록 계획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폐기물 : 1,237.2kg/일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계)555.649톤/일, (지정폐기물)32.904톤/일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②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 [변경없음]

-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관리 도모
-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용도별 면적배분 및 배치를 통해 장래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관리로 환경보전의 안정성 및 쾌적한 산업 환경 도모

2. 관리할 농공단지 면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총면적(m ²)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 고
면 적 (%)	244,721.0 (100.0)	180,230.3 (73.6)	3,887.0 (1.6)	35,075.4 (14.3)	25,528.3 (10.5)	

3.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변경]

○ 입주대상 업종 [변경]

• 산업시설구역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180,230.3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27,428.8	15.2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31.3	12.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425.0	7.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653.2	60.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6,792.0	3.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산업시설구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계	180,230.3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27,428.8	15.2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31.3	12.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425.0	7.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768.1	44.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68.7	1.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885.1	16.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23.3	1.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D35)은 건축물 지붕사용에 한하여 허용함
- ※ 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에 따라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 제외업종 (별첨1)
-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의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산업 : 농기계 및 농기계 관련 제조업)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시설구역 [변경없음]
 - 농공단지 및 주변지역까지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
 - 입주자격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제1호, 제18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및 제36조에 따라 사업성 및 환경성 적합업체
 - 당해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것
 - 유치업종 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지는 폐수 무배출 업체만 허용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건축물지붕

사용에 한함)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7호 규정의 관리기관 및 제19호의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제44조제1항 규정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기타 관리기관에서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

○ 입주 우선순위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 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19조(사업성 검토), 제20조(종합심사), 제36조(환경성 검토)의 각 규정에 적합한 업체
- 1순위 : 농기계 및 농기계 관련 제조업체로서 입주희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
- 2순위 : 연접필지를 포함한 신청으로 신청면적의 합이 큰 신청자
- 3순위 : 분양대금 일시납 또는 우선 완납업체
- 4순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업체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분양공고 시 별도로 정함

• 지원시설구역

- 경쟁입찰 낙찰가격 순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 6항 제3호)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찰하여 선정하며, 재입찰시에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 기타사항 [변경없음]
 - 관리기관은 공해·용수·인접업체영향·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매매·경매·기타)전에 농공단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4. 농공단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

- 용도별 구역면적 [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244,721.0	100.0	
산업 시설 구역	소 계	180,230.3	73.6	
	식료품 제조업	27,428.8	11.2	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31.3	9.3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425.0	5.5	C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653.2	44.8	C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792.00	2.8	C27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지원시설구역		3,887.0	1.6	
공공 시설 구역	소 계	35,075.4	14.3	
	도 로	25,251.9	10.3	
	주 차 장	3,908.7	1.6	노외주차장 3개소
	유 수 지	5,330.0	2.2	저류지 3개소
	수도공급설비	584.8	0.2	배수지 1개소
녹지 시설 구역	소 계	25,528.3	10.5	
	공 원	2,907.5	1.2	소공원 2개소
	녹 지	22,620.8	9.3	완충녹지 5개소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244,721.0	100.0	
산업 시설 구역	소 계	180,230.3	73.6	
	식품 제조업	27,428.8	11.2	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31.3	9.3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425.0	5.5	C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768.1	32.6	C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68.7	1.4	C27 C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9,885.1	12.2	C25 C27 C29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23.3	1.4	C26 C27 C28 C29
지원시설구역		3,887.0	1.6	
공공 시설 구역	소 계	35,075.4	14.3	
	도 로	25,251.9	10.3	
	주 차 장	3,908.7	1.6	노외주차장 3개소
	유 수 지	5,330.0	2.2	저류지 3개소
	수도공급설비	584.8	0.2	배수지 1개소
녹지 시설 구역	소 계	25,528.3	10.5	
	공 원	2,907.5	1.2	소공원 2개소
	녹 지	22,620.8	9.3	완충녹지 5개소

※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2)

○ 용지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유치업종 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지는 폐수 무배출 업체만 허용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건축물지붕 사용에 한함)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A11~A51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 A52~A53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단
MAIN SILO, CLEANNING ROOM, SUB SILO, MILL TOWER,
BULK는 최고층수 15층 이하 (45m이하), 배치- A53 동측 및
A52, A53 남측부분은 옹벽으로부터 15m 이격하여 건축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7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규정의 종업원 기숙사
 - 기타 관리기관에서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시설
 -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판매시
설(해당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
함), 운수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기숙사, 이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함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 공공시설구역 중 주차장용지
 - 허용용도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부대시설은 관리사
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
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칠곡군 주차장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며, 가 시설물의 기능과 주변지역 용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 불가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단, 부대시설만 설치할 경우 건폐율 2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 녹지시설구역
 - 농공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용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5.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변경]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180,230.3	100.0	
C10	27,428.8	15.2	
C22	22,931.3	12.7	
C25	13,425.0	7.5	
C29	109,653.2	60.8	
C27	6,792.0	3.8	
C29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180,230.3	100.0	
C10	27,428.8	15.2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931.3	12.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425.0	7.5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768.1	44.3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68.7	1.9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885.1	16.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23.3	1.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3), 분양대상면적도(별첨4)

○ 배치기준 [변경없음]

-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
-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기본방향

- 지원시설용지는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측면을 고려하여 「산집법」 제2조 제17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규정의 종업원 기숙사로 설치 및 운영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불가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용도 : 입주계약 시 지정한 용도
 - 세부용도(시설명) : 지원시설
 - 면적(m²) : 3,887
- 지원시설 관리운영
 - 최초의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7. 생산·수출, 고용전망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생산 및 수출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품목별 생산·수출계획 수립 ▶ 생산·수출애로 타결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 품목별·지역별 해외시장 동향 파악 ▶ 기타 생산·수출촉진시책 지원 및 정보제공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자동화 유도 ▶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상담 실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 활동 강화 ▶ 해외인증 획득 지원
고용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유희노동력(주부, 고령자)의 흡수로 농외소득 증대 ▶ 외국인 근로자 확보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 ▶ 공익근무요원의 최대한 확보 지원(지방병무청과 협의) ▶ 취업상담실 운영 ▶ 유희인력(주부·고령자)활용방안 강구 ▶ 인근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통근버스 공동이용

8.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 전망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임금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외 수입에 의존하는 농가로 하여금 농외소득의 혜택으로 수입의 안정화 기대 ▶ 농번기에는 조업방법의 탄력적 운용으로 노시간 화합 및 고용안정의 도모와 농외소득증대 효과의 극대화
기능인력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 해외연수 ▶ 노·사 관계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협조방안강구 ▶ 유관기관·단체와의 노사문제대책 협조체제 구축 ▶ 종업원에 대한 기술연수 알선 및 교육비 보조 ▶ 직종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위탁교육 기능인력육성 ▶ 생산·일용근로자 지역주민 우선채용 ▶ 유희노동력(부녀자, 노령자, 실습생)의 적극적인 채용 ▶ 지역 원자재의 최대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류 우선공급

9.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기능인력 육성 및 수급방안 [변경없음]

○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입주예정 업체수	고용예정인원(명)			연평균 노임 (백만원)	비고
	계	기능인력	단순노무		
23	1,000	300	700	18,000	

○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농공단지 인근지역의 취업가능 인력 현황)

인 구 수 (명)			취업가능인력 (추정)(명)
계	농가인구수	비농가인구수	
32,600	8,150	24,450	2,000

○ 관내 제조업체 현황

구 분	계	섬유	금속	화학	기계	전자	식품	목재 출판	기타
업체수	1,370	200	226	81	193	95	35	82	458
고용인원	25,381	3,559	3,440	1,501	2,773	3,751	502	983	8,872

10. 그 밖에 농공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사후관리계획지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집법」 과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분양용지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분양용지는 취득한 가격에 「산집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공장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 제42조에 정하는바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m² 이상으로 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본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1차 처리 후 왜관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여야 함
-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기반시설지원
 -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농공단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칠곡군 도시계획과(054-979-69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별첨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제외업종 [변경]

【기 정】

입주 예정 업체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분류)	업체수	면적(m ²)	입주업종 (중분류)	입주 제외업종
계	23	180,230.3	◇ 식료품 제조업(C10)	◇ 도금업(25922)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1	27,428.8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3	22,931.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3	13,425.0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109,653.2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	6,792.0		

【변 경】

입주 예정 업체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분류)	업체수	면적(m ²)	입주업종 (중분류)	입주 제외업종
계	23	180,230.3		◇ 도금업(25922)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한 제외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1	27,428.8	◇ 식료품 제조업(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3	22,931.3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3	13,425.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2	79,768.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1	3,468.7		

입주 예정 업체			향후계획	
입주업종 (중분류)	업체수	면적(m ²)	입주업종 (중분류)	입주 제외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2	29,885.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	3,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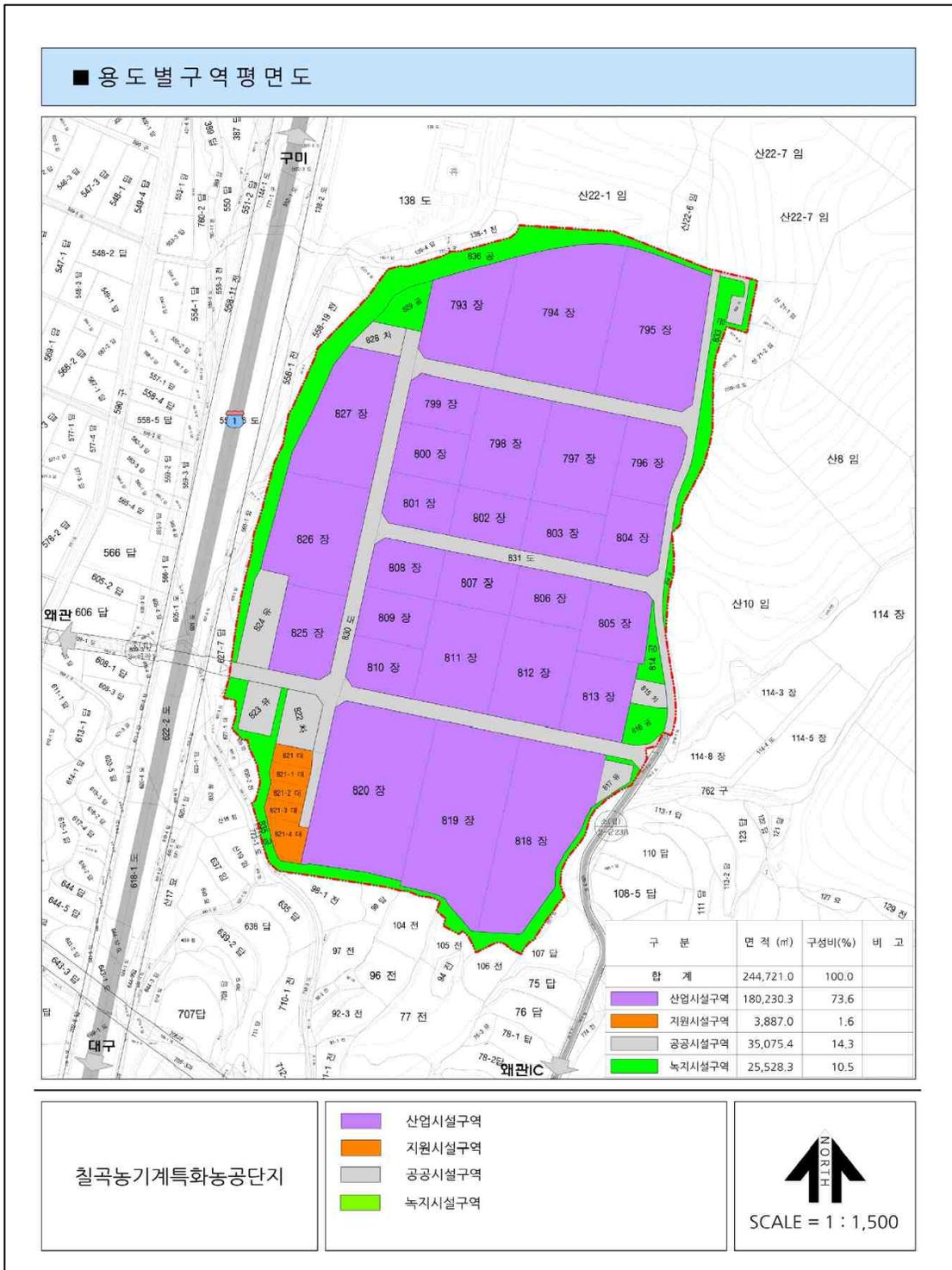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D35)은 건축물
지붕사용에 한하여 허용함

※ 농공단지 입주 불가 사업장(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
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폐기물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지정악취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업종으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에 해당하는 사업장
-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입주 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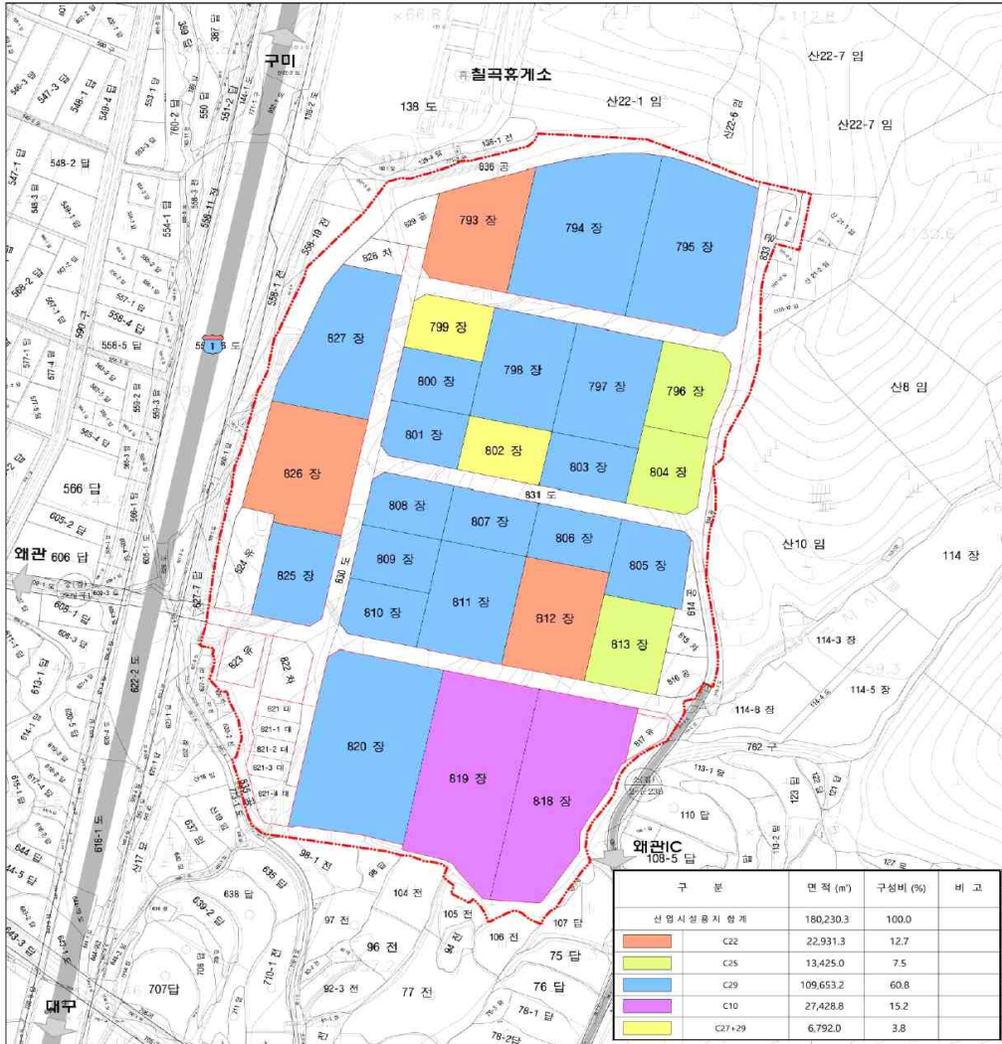
【별첨2】 용도별 구역 평면도



【별첨3】업종별 배치계획도

【기 정】

■ 유치업종배치계획(기정)도



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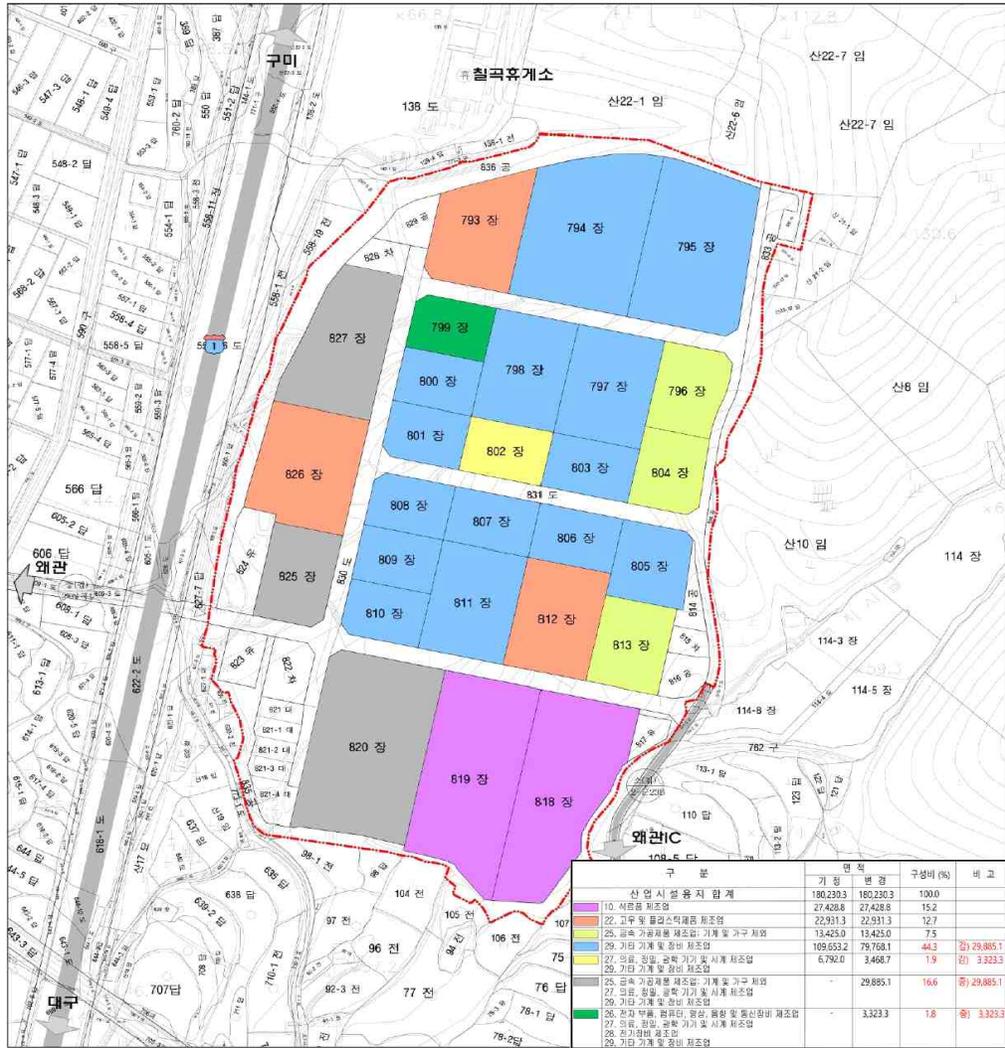
- 농 공 단 지
- 식료품 제조업 (C1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의류, 경미, 광학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NORTH
 SCALE = 1 : 1,500

【별첨3】업종별 배치계획도

【변 경】

■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도



구분	면적	변경	구성비 (%)	비고
산업시설용지 합계	180,230.3	180,230.3	100.0	
10. 식량용 제조업	27,428.8	27,428.8	15.2	
22. 고무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531.3	22,531.3	12.7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도구 제조	13,425.0	13,425.0	7.5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653.2	79,768.1	44.3	감) 29,885.1
27. 의료, 용광, 화학, 기계 및 사계 제조업	6,792.0	3,466.7	1.9	감) 3,325.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885.1	16.6	증) 29,885.1
27. 의료, 용광, 화학, 기계 및 사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323.3	1.8	증) 3,323.3
27. 의료, 용광, 화학, 기계 및 사계 제조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

- 10. 식량용 제조업
- 22. 고무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도구 제조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7. 의료, 용광, 화학, 기계 및 사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용광, 화학, 기계 및 사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0
C22
C25
C29
C27·C29
C25·C27·C29
C26·C27·C28·C29

NORTH

SCALE = 1 : 1,500

【별첨4】 분양대상면적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 시설용지의 30%를 사용

경상북도 고시 제2020 - 2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작성사유

- 「도로법」 제25조 및 제 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하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①구 분	②종 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km)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 고
현구역	국가지원 지방도	서천~ 경주 (68호선)	시점 :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639-4	0.72		현 도로여건 반영	
변경구역			종점 :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638-7				
현구역	지방도	구성~ 상리 (901호선)	시점 :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528	0.95		현 도로여건 반영	
변경구역			종점 :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592-1				

3.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접도구역 해제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 (도면계재 생략)

※ 참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경상북도고시 제2020-279호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대상사업 : 2016년 ~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2. 지적재조사지구 변경내용

가. 지구명칭 변경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예천군	예천군수	당 초	소화지구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2번지 일원)
		변 경	소화2지구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2번지 일원)

나. 사업기간 변경

1) 용정1지구 :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144-1번지 일원

- (당초) 2016.01.01. ~ 2020.08.31. → (변경) 2016.01.01. ~ 2020.12.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 봉성 늪실지구 :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130번지 일원

- (당초) 2019.01.01. ~ 2020.12.31. → (변경) 2019.01.01. ~ 2021.3.31.

- 변경사유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다. 대상필지 또는 대상면적 변경

1)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 지구별 변경 현황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청송군	청송 군수	상평1지구 (청송군 주왕산면 상평리 19번지 일원)	당초	146	283,998	54	88.9	84.2
			변경	149	285,868	54	88.9	84.3
예천군	예천 군수	소화2지구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501-2번지 일원)	당초	142	51,238	54	75.0	90.9
			변경	153	52,873	55	73.0	85.0

- 변경사유

(청송군 상평1지구) 사업지구 내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예천군 소화2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 지구별 변경 현황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안동시	안동시장	무릉1지구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22-1번지 일원)	당초	267	306,198	80	72.2	81.2
			변경	267	297,980	80	72.2	80.7
안동시	안동시장	금곡1지구 (안동시 금곡동 3-27번지 일원)	당초	33	5,415	24	73.9	70.2
			변경	33	5,386	24	73.9	70.0
안동시	안동시장	금소1지구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430번지 일원)	당초	202	76,210	119	75.7	81.0
			변경	209	78,710	121	74.4	78.4
영천시	영천시장	매양·완전지구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25-1번지 일원)	당초	99	118,794	36	83.3	92.3
			변경	96	96,698	38	78.9	92
영천시	영천시장	황정2지구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47번지 일원)	당초	93	157,697	28	71.4	85.7
			변경	95	149,848	28	71.4	85.7
문경시	문경시장	신기 제1지구 (문경시 신기동 67-1번지 일원)	당초	261	97,917	114	80.7	86.9
			변경	262	97,917	121	79.3	89.0
군위군	군위군수	금구1지구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455번지 일원)	당초	124	55,353	68	69.1	71.0
			변경	128	55,396	72	72.2	72.7
군위군	군위군수	수서지구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63번지 일원)	당초	149	111,556	78	67.9	90.7
			변경	147	110,835	81	69.1	91.3
군위군	군위군수	무성2지구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 230번지 일원)	당초	101	87,818	41	70.7	87.0
			변경	105	89,537	47	74.5	91.2
청송군	청송군수	월매1지구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358번지 일원)	당초	160	155,207	75	76.0	80.0
			변경	165	164,905	76	77.6	84.0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예천군	예천군수	지보1지구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473번지 일원)	당초	243	124,473	114	70.0	78.3
			변경	281	127,006	122	69.6	77.7
봉화군	봉화군수	봉성 늪실지구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130번지 일원)	당초	124	124,501	45	82.6	96.5
			변경	141	144,954	47	83.7	91.3
울진군	울진군수	전곡지구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284-1번지 일원)	당초	331	368,131	59	76.3	82.3
			변경	341	371,012	62	74.2	83.0

- 변경사유

(안동시 무릉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안동시 금곡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안동시 금소1지구) 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영천시 매양·완전지구) 사업지구 제외·편입 및 지구계 분할 따른 필지·
면적 변경

(영천시 황정2지구) 사업지구 제외·편입 및 지구계 분할 따른 필지·면적
변경

(문경시 신기 제1지구) 사업지구내 토지이동에 따른 필지 변경

(군위군 금구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군위군 수서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군위군 무성2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청송군 월매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예천군 지보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봉화군 봉성늘실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울진군 전곡지구) 사업지구 편입 및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3)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 지구별 변경 현황

시·군	시행자	지구명 (소재지)	구분	필지수	면적 (m ²)	소유자 총 수	동의율(%)	
							소유자	면적
영천시	영천시장	매양지구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2-3번지 일원)	당초	737	467,549	297	69.0	75.9
			변경	764	500,125	326	67.8	76.9
문경시	문경시장	신기 제2지구 (문경시 신기동 60-2번지 일원)	당초	798	737,902	281	70.8	82.9
			변경	802	712,765	282	69.9	85.0
의성군	의성군수	낙정지구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532번지 일원)	당초	172	75,005	40	70.0	79.8
			변경	149	71,296	38	76.0	86.0
예천군	예천군수	생천지구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234번지 일원)	당초	143	168,003	75	66.7	66.7
			변경	148	186,030	78	67.9	70.0
예천군	예천군수	왕신3지구 (예천군 예천읍 왕신리 1번지 일원)	당초	22	59,687	20	80.0	88.4
			변경	23	60,779	21	76.2	86.8
봉화군	봉화군수	법전 척곡1지구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370-1번지 일원)	당초	50	25,039	16	81.3	94.1
			변경	52	25,072.8	17	82.4	96.0
봉화군	봉화군수	봉화 거촌1지구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36-5번지 일원)	당초	87	76,253	22	86.4	85.3
			변경	88	76,678	22	86.4	82.1

- 변경사유

(영천시 매양지구) 사업지구 제외·편입 및 지구계 분할 따른 필지·면적 변경

(문경시 신기 제2지구) 사업지구 제외·편입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의성군 낙정지구) 사업지구 내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예천군 생천지구) 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예천군 왕신3지구) 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봉화군 법전척곡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봉화군 봉화거촌1지구) 지구내외선 분할 및 변경에 따른 필지·면적 변경

3. 변경 일 : 2020. 08. 27.**4. 관계서류 열람장소**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 (054)-880-4055
- 안 동 시 토지정보과 ☎ (054)-840-5069
- 영 천 시 지적정보과 ☎ (054)-330-6382
- 문 경 시 종합민원과 ☎ (054)-550-6788
- 군 위 군 민원봉사과 ☎ (054)-380-6949
- 의 성 군 민원과 ☎ (054)-830-6367
- 청 송 군 종합민원과 ☎ (054)-870-6398
- 성 주 군 민원봉사과 ☎ (054)-930-6382
- 예 천 군 종합민원과 ☎ (054)-650-6925

- 봉 화 군 종합민원과 ☎ (054)-679-6163
- 울 진 군 열린민원과 ☎ (054)-789-6676

5.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0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8. 27.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 하천 (병성천)	교량 설치	<공서교> L=52.0m, B=10.5m <옥산1교> L=42.0m, B=7.0m 영구 977㎡ 일시 3,534㎡	-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891-1 외 9필지(영구) -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942-1 외 35필지(일시)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 시장	영구:허가일로 부터 영구 일시:허가일로 부터 2023. 07. 31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1호

**영덕군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고시**

1.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고시하고,
2. 「수도법」 제46조에 따라 협의된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일반수도사업인가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영덕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남석리 310-3)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공급을 통한 주민의 물복지 실현과 시설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지역간 용수 균형 공급에 그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구 분	시설계획
영덕급수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수관 신설 : D150, L=6.1km(영덕~오천) ● 송수 가압장 : 1개소
지품급수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수관 신설 : D150, L=6.0km ● 송수 가압장 :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천배수지 신설 : V=100m³ ● 배수관 신설 : D80~150, L=25.8km ● 배수 가압장 : 4개소
영해급수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관 신설 : D80~150, L=12.0km ● 배수 가압장 : 4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축산면 일원

5. 급수구역 · 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급수량(m ³ /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인 · 일)
영덕	15,230	6,336	416
지품	1,582	579	366
축산	2,371	1,468	619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 7. ~ '22. 12.
- 급수시작예정일 : 2023. 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일반수도사업 인가내용

구 분	시설물 계획	비고
송천배수지	○ 시설용량 : 100m ³	

10.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A	수도공급설비 (송천배수지)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산35-6번지		증)1,257	1,257	금회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A	수도공급설비 (송천배수지)	· 배수지 신설 - 면적 : 1,257m ²	지품면, 축산면 급수취약지역에 지방상 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공급을 통한 주민의 물복지 실현과 지 역간 용수 균형 공급을 목적으로 함

○ 군관리계획 결정 도면 : 별첨

※ 관련도서는 영덕군 물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관련도서 생략). 끝.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1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취소 한 후 「같은 법률」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처분 사유	근거 법령
부동산개발업 (경북140013)	(주)케이에스건설 (전규만)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57번길 7-2	등록취소 (2020.8.24.)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미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부동산개발업 (경북170015)	서정개발 주식회사 (박윤상)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2560-92	등록취소 (2020.8.24.)	등록요건 미달 (사무실 미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521호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20.5.19.) 및 시행('20.11.20.)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 신설 및 제21조제2항 단서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조례에 명시(안 제37조제1항, 안 제37조제2항제4의2)

3. 개정조례안 : 불임

4. 관련법령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행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여성가족행복과

- 전 화 : 054-880-4537, Fax 054-880-4659

- 이메일 : dusonlove@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도지사는” 을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를 “위원회” 로, “사항에 관하여” 를 “사항을” 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u>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u></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3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u>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u> ----- ----- ----- -----.</p> <p>② <u>위원회</u>----- ----- <u>사항을</u> -----.</p> <p>1. ~ 4. (현행과 같음)</p> <p><u>4의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u> <u>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u> <u>사항</u></p> <p>5.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발취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22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상 북 도 지 사**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3개 기금(청소년육성, 양성평등, 다문화가족지원)이 여성가족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금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립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기금의 구분 및 조성, 계정별 용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관리운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3. 제 정 안 : 붙임**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9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여성가족행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 주 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여성가족행복과

- 전 화 : 054-880-4537, Fax 054-880-4659

- 이메일 : dusonlove@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실현,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계정
2. 양성평등계정
3. 청소년육성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계정별 용도) ① 다문화가족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2.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
3. 다문화가족을 위한 장학금 지원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3.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 6. 청소년교류의 지원
- 7.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 지원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및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양성평등 또는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다문화가족지원 분야 전문가
3.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
4. 청소년육성 분야 전문가
5. 금융·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민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장 및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제41조 및 제56조”를 “제11조 및 제41조”로 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을 삭제한다.

③ 「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을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으로 한다.

관련법령발취**○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시 군

고 시

구미시 고시 제2020 - 227호

구미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구미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7.

구 미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45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노외주차장)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주차장 면적 : 1,742 m ²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41 ○ 성 명 : 서 영 주
5. 실시계획인가신청기일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주시 고시 제2020 - 22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8. 27.

상 주 시 장

하천의 명칭	이안천(지방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상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도남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291-78번지 면적 : 34.0㎡(일시), 4.0㎡(영구)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우산2리(무들리)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관로매설 사업개요 : 관로매설 (D75) L=50.0m
점용 기간	2020년 8월 25일부터 영구적

고령군 고시 제2020 - 943호

고령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군 지방도905호선(중로1-3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고령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27일

고령군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변 호	폭원 (m)								
기 정	중 로	1	3	20	보조 간선 도로	4,012	다산면 월성리 590	다산면 송곡리 1006	일반 도로	-	고령군 고시 제2012-219호 (2012.03.12)	군도 5호선
변 경	중 로	1	3	20	보조 간선 도로	4,012	다산면 월성리 590	다산면 송곡리 1006	일반 도로	-	-	지방도 905호선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3호선	중로 1-3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구간 선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 20m - L = 4,0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선형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고령군청 도시건축과(054-950-670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고시 제2020-75호

성주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정정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고시 제 2020-57호(2020.06.25.)로 고시한 성주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일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성 주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사유

- 성주군 고시 제2020-57호(2020.06.25.)로 고시된 사항 중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707호, 2020.05.29.) 및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변경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88호, 2020.06.30.)에 따른 실효 유예사항 반영 및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 정정 고시 내용 이외 사항은 기존 고시내용을 따름.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정정사항)

【가천 도시지역】

가. 공간시설

(1) 공 원

[당 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가천 공원	근린 공원	창천리 943번지	26,100	감) 26,100	-	경고제251호 (1983-12-12)	실효
폐지	2	창천1호 공원	어린이 공원	창천리 398-1번지	2,060	감) 2,060	-	경고제251호 (1983-12-12)	실효

[정 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가천 공원	근린 공원	창천리 943번지	26,100	감) 26,056	44	경고제251호 (1983-12-12)	면적축소 (국공유지 실효유예)
변경	2	창천1호 공원	어린이 공원	창천리 398-1번지	2,060	감) 1,648	412	경고제251호 (1983-12-12)	면적축소 (국공유지 실효유예)

【초전 도시지역】

가. 공간시설

(1) 공 원

[당 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초전 공원	근린 공원	문덕리 산2번지	73,720	감) 32,951	40,769	경고제94호 (1975-05-17)	미집행 구간의 실효

[정 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초전 공원	근린 공원	문덕리 산2번지	73,720	감) 32,797	40,923	경고제94호 (1975-05- 17)	면적축소 (국공유지 실효유예)

3. 실효일자(효력발생일) : 2020년 7월 1일

4. 실효사유 :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국공유지는 실효유예)

5.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6. 관계도서는 성주군 도시건축과(☎054-930-65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성주군 고시 제2020 - 76호

월항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일원의 월항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성 주 군 수

1. 사업의 명칭

가. 명칭 : 월항 농공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가. 성 명 : 성주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금회 사업에 한함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1994년 준공 된 월향 농공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공단지 주요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등록전환 된 지적공부 상의 면적으로 정정하고자 함

※ 금회 사업에 한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나. 면 적 : 최종 승인시 - 257,763m²

금 회 - 257,763.3

※ 등록전환 된 지적의 면적으로 정정

5.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 : 2020년 8월 ~ 실시계획 승인 시

※ 농공단지는 공사완료 되었으며 금회 사업은 주요유치업종 변경 및 면적 정정임

6. 주요 유치업종

가. 주요 유치업종

1) 최종 승인시

구분	주요 유치업종	비고 (입주가능 업종 중 제외업종)
음식료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소분류 상 101 제외
섬유의복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소분류 상 142 제외
목재종이출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소분류 상 171 제외
석유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소분류 상 221 제외
비금속소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철강	1차금속 제조업(C24)	소분류 상 241, 242 제외
기계금속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세세분류 상 25922 제외
기타제조업	가구 제조업(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2) 금회

구분	주요 유치업종	비고 (입주가능 업종 중 제외업종)
음식료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소분류 상 101 제외
섬유의복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소분류 상 142 제외
목재종이출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석유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소분류 상 221 제외
비금속소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철강	1차금속 제조업(C24)	소분류 상 242 제외
기계금속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세세분류 상 25922 제외
전기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세분류 상 2622 제외
운송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제조업	가구 제조업(C32) 기타제품 제조업(C33)	
지식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정보통신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분	주요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최종 승인시	금회	최종 승인시	금회	
계		204,842	204,842.2	100.0	100.0	
음식료 식료품 제조업(C10)	13,145	17,833.6	6.4	8.7	
 음료 제조업(C13)					
섬유 의복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89,725	90,320.2	43.8	44.1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목재 종이 출판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8,315.5	-	4.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석유 화학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43,660	34,599.8	21.3	16.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 소재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	-	-	-	
기타	철강 1차금속 제조업(C24)	-	53,773.1	-	26.3
	기계 금속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 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운송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제조업 가구 제조업(C32)	58,310		28.5	
..... 기타제품 제조업(C33)						
지식 산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정보 통신 산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257,763	증 0.3	257,763.3	100.0	

2) 세부토지이용계획(농공단지 개발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최종 승인시	금회		
합 계	257,763	257,763.3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204,842	204,842.2	79.5	
지 원 시 설 용 지	5,359	5,359.3	2.1	
공 공 시 설 용 지	47,562	47,561.8	18.4	
도 로	19,665	19,665.4	7.6	
배 수 지	1,394	1,393.6	0.5	
오·폐수처리장	8,908	8,907.7	3.5	
법 면	17,595	17,595.1	6.8	관리용도로포함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

가) 단지내 도로

○ B = 14m, L = 317m

○ B = 11m, L = 1,085m

○ 법면부지 내 관리용 도로 B = 3m(L = 964m), B = 1.5m(L = 76m)

2) 용수공급계획

가)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 수요량(m ³ /일)		비 고
	최종 승인 결과 반영	금회	
계	2,554	2,469	
공업용수	2,444	2,308	
생활용수	110	161	

※ 생활용수 : 단지 동측과 남측의 도시계획도로 변의 광역상수관로(D150mm)에서 분기하는 D50mm~80mm관로(L =1,560m)(단지내)를 통하여 각 시설로 인입

※ 공업용수 : 심정(관정) 개발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며, 단지내 배수지(용량 : 1,400ton)에서 D80mm~150mm 관로(L = 1,780m)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에 공급

3) 우수처리계획

가) 처리계획

○ 단지내 D600mm(L = 1,740m)관로를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방류

4) 오·폐수처리계획

가) 오·폐수량 산정

구 분	오·폐수 발생량(m ³ /일)		비 고
	최종 승인 결과 반영	금회	
계	2,228	2,087	
공장폐수	2,141	1,966	
생활오수	87	121	

※ 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하수관로(D350mm, L = 1,920m)를 통해 단지내 설치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단지외 별도의 하수관로(D400mm, L= 2.3km)로 인입되어 최종 백천으로 방류

※ 단지내 오·폐수처리장 : 차집방식 - 분류식

수처리방식 - 가압부상식(생물학적처리)

설계용량 - 3,000톤/일

5) 전력공급계획

가) 전력사용량 산정

○ 최종 승인시

- 전압 : 229kv, 용량 8,000kVA

○ 금회

구 분	설비용량 (kVA)	최대부하 (kW)	비 고
합 계	21,531	16,128	
산업시설용지	20,809	15,478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722	650	

※ 농공단지내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6) 통신공급계획

가) 통신사용량 산정

구 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629	
산업시설	615	0.03회선/10m ²
지원시설	14	0.025회선/10m ²

※ 농공단지내 통신공급은 통신사업자가 공급

8) 폐기물처리계획

가) 폐기물 총발생량

구 분	폐기물 발생량(톤/일)		비 고
	최종 승인 결과 반영	금회	
계	119.8	125.3	
생활폐기물	1.0	1.5	
사업장폐기물	118.8	123.8	
불연성	45.0	39.2	
가연성	31.3	59.0	
지정폐기물	42.5	25.6	

※ 생활폐기물은 성주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소각 및 매립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할 계획임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획관리지역	257,763	증 0.3	257,763.3	100.0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월항농공단지)	계획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0.3	150% 이하	등록전환 된 지적공부 상의 면적으로 정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월3	월항농공단지	월항면 장산리 1541	235,310	-	235,310	-	19-10-9

9. 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성주군 기업지원과(☎054-930-64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시 군

공 고

영천시 공고 제2020-1160호

영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영천시 완산동 702-2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7.

영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공람장소 : 영천시 도시계획과 (☎ 054-330-6592)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천시 완산동 702-29번지 일원

나. 사업의 목적 : 미소지움1차~2차간 도시계획도로(중로1-완1호선, 중로1-완2호선)중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영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미소지움1차~2차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내용

- 1) 사업량 : 도로개설 B=6.5m, L=222.0m (중로1류-완1호선, 중로1류-완2호선)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영천시장
- 2) 주 소 :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 2025.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공람장소에 비치)

아.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종류 및내용	
1	영천시 완산동	1324- 25	도로	211	101	기획재정부	국				
2	"	702- 29	과수원	956	19	영천시	공				
3	"	701-6	과수원	134	134	영천시	공				
4	"	701- 11	과수원	294	294	영천시	공				
5	"	701-5	대 지	71	71	영천시	공				
6	"	701- 10	대 지	131	131	영천시	공				
7	"	701-4	과수원	101	101	영천시	공				
8	"	701-9	과수원	174	174	영천시	공				
9	"	700- 7	전	278	219	영천시(1/3) 김남욱(2/3)	공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15-11(이천동)				
10	"	700-1	전	57	57	영천시(1/3) 김남욱(2/3)	공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15-11(이천동)				

일련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1	"	1324- 23	도 로	212	149	기획재정부	국				
12	영천시	700- 2	도 로	779	6	영천시	공				
13	"	700- 8	진	315	267	영천시(1/3) 김남욱(2/3)	공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15-11(이천동)				
14	"	700- 5	진	98	89	영천시(1/3) 김남욱(2/3)	공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15-11(이천동)				
15	"	699- 6	과수원	35	35	영천시	공				
16	"	699- 13	과수원	152	152	이자야(200/1428) 이상갑(357/1428) 조분남(357/1428) 이동훈(200/1428) 이정훈(314/1428)	영천시 시장4길 27 영천시 강남길37, 602호 예천군 호명면 내신2길 194 구미시 형곡로73, 303동1206호	영천축 산업협 동조합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17	근저당권	
17	"	1472	도 로	7,058	269	영천시	공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사서

일련 번호	위 치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1	영천 시	완산 동	699 -13	호두나무	30년	2	주	이자야(200/1428) 이상감(357/1428) 조분남(357/1428) 이동훈(200/1428) 이정훈(314/1428)	영천시 시장4길 27 영천시 강남길37, 602호 예천군 호명면 내신2길 194 구미시 형곡로73, 303동1206호					
1-2	"	"	"	대추나무	30년	1	주	"	"					

경산시 공고 제2020-1166호

경산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사전 열람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경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지정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0번지 일원

변경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290-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공원)
- 명 칭 : 중로3-7호선, 소로1-88호선, 소로1-89호선, 소로3-401호선, 소로
1-87호선, 경산서희소공원

3. 사업의 규모 : 기정 - A = 6,395m²

$$\text{변경} - A = 6,473\text{m}^2$$

가. 도로 : 기정 - A = 5,815m²

$$\text{변경} - A = 5,893\text{m}^2$$

- 중로3-7호선: L = 183m, B = 0~3m (도로폭확장)
- 소로1-88호선: L = 74m, B = 10m
- 소로1-89호선: L = 139m, B = 10m
- 소로3-401호선: L = 238m, B = 2~4m
- 소로1-87호선: L = 198m, B = 10m

나. 공원(변경없음)

- 경산서희소공원 : A = 580m²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기정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47길 37, 4층(중방동)
변경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 20길 42, 2층(서상동)
- 성 명 :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 대표 조광현

5. 사업의 기간

- 지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4. 20.

6. 실시계획인가 사유

- 지적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면적변경 및 사업기간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장소 비치, 경산시 홈페이지 참조

8. 열람 및 의견청취 장소 : 경산시청 도시과**9.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0. 8. 27. ~ 2020. 9. 10.(공고일로부터 15일간)****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도시과(☎810-5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송군 공고 제2020 - 740호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주방천(주방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청 송 군 수

1. 사업 개요

- 사업의종류 :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제방 등)설치 공사
- 사 업 명 : 주방천(주방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예정지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 청송읍 송생리 일원
- 사 업 량 : 하천개수(축제 및 호안) L=6.09km
- 사업시행자/주소 : 경상북도/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사 업 기 간 : 2020년 3월 ~ 2024년 3월

2. 관계서류 : 위치도, 계획평면도, 용지도 및 용지조서 열람장소 비치

3.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0. 8. 24. ~ 9. 7.(14일간)
- 열람장소 : 청송군 안전재난건설과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 기간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의견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안전재난건설과(☎054-870-6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8.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금호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영천시장(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과전동 143번지 일원 면적 : 1,469m ²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역사도심문화테마 마을 조성 시설개요 : 조경(회양목, 장미, 잔디 식재 등), 징검다리 상 LED 조명(260EA) 설치, 평의자(2EA) 설치, 안내판(1EA) 설치 등
점용 기간	2020년 8월 25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 타

규 칙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795호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4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796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로,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797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1년

4.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 3년

③ 종합감사를 제외한 그 밖의 감사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감사결과 처분)” 을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의 종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등” 을 “처분 또는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 이라 한다)” 로, “처분을” 을 “처분 등을” 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감사관 및 교육장” 을 “교육감” 으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중 “장 또는 공무원 등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 를 “장은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 로, “교육감 및 교육장” 을 “교육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관 및 교육장” 을 “교육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798호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다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으로 입학·전학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졸업 예정 유아”란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예정인 만 5세의 유아를 말한다.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사유서
2. 전원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폐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교육감은 폐쇄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쇄 시기)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일은 매년 2월 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립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해 자문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졸업 예정 유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전체 원아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 유치원은 공립전환 추진 절차에 따른다.

제7조(전원 조치)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 유아를 포함한 원아 전체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수익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의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감에게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 인가를 신청한 유치원에 대하여 재무감사 등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쇄 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아 지원 계획서

1. 유치원 현황 및 유아조치 방법

(기준: 제출일 현재, 단위: 학급, 명)

인가현황		학급편성 현황				유아조치 방법				
학급	정원	편성 학급	현원			졸업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계
			만3세	만4세	만5세					

2. 전원조치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만 3세반 00명, 만4세반 00명: ○○ 유치원 입학
- 만 3세반 00명, 만4세반 00명: 어린이집 입학
- 만 3세반 00명, 만4세반 00명: 이사, 가정보육 등
- 만 5세반 00명: 졸업

3. 전원조치 현황

연번	유아 성명	학부모연락처	전원기관명	전원(예정)일	비고
1	○○○	010-0000-0000	○○유치원	0000.00.00.	
2	○○○	010-0000-0000	○○어린이집	0000.00.00.	
3	○○○	010-0000-0000	○○초등학교병설유치원	0000.00.00.	
4					
5					
6					
7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799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학교교육지원센터 부설센터 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지역	부설 센터
1	포항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인성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경북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2	경주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3	김천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학생문화예술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4	안동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인성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경북북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5	구미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인성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경북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번호	지역	부설 센터
6	영주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영어체험센터(4개소), 유아교육체험센터
7	영천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영어체험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8	상주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9	문경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인성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10	경산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인성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영어체험센터, 유아교육체험센터, 경북남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11	군위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체험장
12	의성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13	청송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14	영양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체험장
15	영덕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16	청도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17	고령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18	성주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영어체험센터
19	칠곡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유아교육체험센터
20	예천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문화예술체험장
21	봉화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22	울진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발명교육센터
23	울릉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지원센터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교육규칙 제800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임 종 식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 지정(제3조 관련)

기관명칭	회계기관의 구분	회계직의 지 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본 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 리 관	재무정보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부서의 장(재무정보과장 제외)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재무정보과 계약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 납 원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인 사무관 또는 장학관(물품출납원인 사무관은 제외)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교육장 (행정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행정 지원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 리 관	행정지원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 원과장), 각 과의 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하는 행정지원과장 또는 재정지원과장은 제외)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행정지원과(재정지원과가 있는 교육지원 청은 재정지원과)의 회계업무담당주사
		분임직	분임물품출 납 원	각 과의 회계업무담당주사(물품출납원 제외), 담당주사 미배치과는 회계업무담당주무자
관서 (제1관서와 제2관서)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 (단, 부장보직이 있는 관서는 총무부장)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 ○ 학교 외의 관서는 총무과장,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 무담당과장, 과장 보직이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주사, 담당주사 미배치관서 는 회계업무담당주무자
		분임직	분임물품출 납 원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기 타

공 고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0 - 5호

공직자재산등록사항 수시공개목록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이재훈 전)경상북도테크노파크원장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상북도	직위	(진)경북테크노파크 크원장	성명	이재훈
본인과의 관계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증가액 (실거래 가격)	현재가액	변동사유
▶ 토지(소계)		17,502	1,794	19,296	
본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972번지 1,514.00㎡	11,112	985	12,097	공시지가 변동
본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022번지 426.00㎡	6,390	809	7,199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1,437,377	0	1,339,840	
본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림프빌 드수성 건물 141.73㎡ 중 70.86㎡	382,500	0	382,500	
배우자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대구역센트럴자 이 상가동 건물 141.59㎡	432,377	0	352,840	공시지가 변동
배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림프빌 드수성 건물 141.73㎡ 중 70.86㎡	382,500	0	382,500	
배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보성서한 타운 건물 116.65㎡	240,000	0	222,000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선박 및 항공기(소계)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소계)	5,590	0	5,590	
배우자	자동차 2008년식 CR-V 2WD 배기량(2,354cc)	5,590	0	5,590	변동없음

▶ 예금(소계)		328,607	96,873	30,864	394,616
본인	KB증권 32,178(1,275 감소), 교보생명보험 48,750(1,250 증가), 국민은행 847(109 감소), 대구은행 14,154(51 증가), 삼성생명 보험 26,192(1,015 증가), 신한은행 300, 우리은행 26, 한국교직원공제회 88,779 (2,864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76,251(1,630 증가), 한화손해보험 13,270(1,120 증가)	294,201	35,872	29,326	300,747
배우자	DB손해보험(주) 13,520(679 증가), KB증권 20,415(19,033 증가), 대구은행 2,140(1,052 감소), 새마을금고 40,020(39,80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8,732(808 증가), 신한은행 4, 증소기업은행 4,000	29,563	60,806	1,538	88,831
장남	국민은행 212(1 증가), 농협은행 164, 대구은행 11, 키움닷컴증권 109(94 증가)	401	95	0	496
차남	국민은행 4,541(100 증가), 신한은행 1	4,442	100	0	4,542
▶ 증권(소계)		274,063	23,251	191,416	105,898
본인	차바이오테크 3,450주	49,852	21,908	0	71,760
배우자	에코프로 940주(8,293주 감소), 차바이오테크 0주(600주 감소)	215,950	0	191,416	24,534
장남	에코프로 368주	8,261	1,343	0	9,604

잔액 변동

주식매도 및 평가
금액 변동

▶ 채권(소계)		95,000	0	0	95,000	
본인	- 사인간채권	95,000	0	0	95,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1,045,024	178,905	174,927	1,049,002	
본인	금융 채무 대구은행 270,848(63,427 증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0(41,992 감소), 신한은행 128,119(3,514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35,959(9,637 감소)	419,614	69,829	54,517	434,926	일부 채무 상환 및 신규 채무 생성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대구역센트럴사이 상가동 임대보증금	20,000	0	0	2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보성서한 타운 임대보증금	300,000	0	0	300,000	변동없음
배우자	금융 채무 DB손해보험(주) 6,700(1,700 증가), KB 증권 0(120,410 감소), 대구은행 180,000, 새마을금고 40,000(40,000 증가), 하나캐피탈 67,376(67,376 증가)	305,410	109,076	120,410	294,076	일부 채무 상환 및 신규 채무 생성
▶ 회원권(소계)		5,000	0	0	5,000	
본인	콘도 미니엄 포레스트캠프	5,000	0	0	5,000	변동없음
총 계		1,118,115	-56,987	144,890	916,238	증감액: -201,877천원 (기안번호: -72,492천원)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한 세상